

技術用役育成法 施行 一年間の 凹凸

金 京 宇※

(新都技術公社常務理事)

1. 머 리 말

工業立國 全國民의 科學化는 어제 오늘의 問題가 아니라 이미 數世紀前부터 先進諸國의 그 自身, 先進을 겨냥한 經世의 定道로 삼고 끊임 없이 그길을 開拓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한발짝 뒤늦게 이길을 깨닫고 그들이 앞서 지나간 길을 따라 그들을 좇기 위해서 빠른 速度로 치달고 있다.

1973年 2月 5日字로 技術用役育成法이 公布되고, 이어 그 施行令(1973年 9月 7日)이 公布되어 事實上 그 適用施行을 본지 1年間(1974年)의 行蹟을 되돌아 보고 問題點이 무엇이 었던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將來의 發展方向은 어떠한가를 提示해보고자 한다.

2. 技術用役業體登錄 및 技術士就業現況

(1) 業體登錄現況

지난 1974年末 現在 科技處에 登錄된 技術用役業體數는 12個部門 41個分野에 걸쳐 85個業體가 187個專門分野를 登錄하고 있다.

그 內容을 보면 綜合業體가 6業體(7.0%)에 74個(39.6%) 分野, 專門業體가 14業體 (16.5%)에 40個(21.4%) 分野, 個人業體가 65業體(76.5%)에 73個(39.0%) 分野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187個 專門分野의 部門別現況을 보면 建設專門(土木 및 都市計劃分野)이 4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電氣 14.4%, 機械 9.6% 順位이다.

<表 1>

部門別專門分野登錄現況

부 문	종합기술	전문기술	개인기술	계	구성비	비 고	부 문	종합기술	전문기술	개인기술	계	구성비	비 고
기 계	9	3	6	18	9.6%		진 축	—	—	—	—	—	
금 속	—	—	2	2	1.1		섬 유	—	—	—	—	—	
화 공	8	—	3	11	5.9		광 업	—	4	3	7	3.7	
진 기	12	3	12	27	14.4		집 보	—	—	—	—	—	
진 자	—	—	—	—	—		국토개발	1	2	3	6	3.2	
통 신	2	2	1	5	2.7		의 양	—	—	—	—	—	
조 선	2	4	1	7	3.7		안전관리	—	—	—	—	—	
항 공	2	—	1	3	1.6		생산관리	1	—	3	4	2.1	
토 목	31	19	36	86	46.0		산업응용	6	3	2	11	5.9	
							합 계	74	40	73	187	100	

(2) 技術士 用役業參與現況

* 지난 年末 現在 技術用役業體 技術士 參與現況을 보면 總 103名이 參與하고 있어 總技術士(施工, 建築部門除外) 會員(415名)의 25.5%에

※ 國土開發技術士(地域 및 都市計劃)

該當하고 있으며 業體區分 上으로 보면 綜合이 34%(36名) 專門 29.2%(31名) 個人이 36.8%(39名)으로 되어 있다.

다시 部門別로는 建設部門이 63名(59.5%), 應用理學이 12名(11.3%), 鑛業이 7名(6.6%) 順位로 되어 있다(別表 1參照).

(3) 業務實績現況

지난 1年間の 業務實績을 보면 總體的으로 全分野에 걸쳐 總 1,034件에 4,831,409천원으로 前年(1973)의 632件 2,133,627천원보다 2.3배가량이 늘어났다.

業體規模別 實績을 보면 綜合 6個業體(74分野) 219件에 2,270,799천원으로 全體의 47.0%, 專門 14個業體(40分野)가 246件에 972,355천원으로 20.1%, 個人 65業體(73分野)에 1,588,255천원으로 32.9%를 各各 차지하고 있으며 登錄

된 總 分野數는 187個에 達한다(表 1參照).

다음에 分野別로 亦是 總 1,034件에 4,831,409천원中 建設分野가 472件에 2,967,191천원 (61.4%)이 首位이고 다음 應用理學이 279件에 579,303천원(12%) 順位이고 鑛業이 0.2%로 最低이다.

그러나 金屬을 비롯한 4個 部門은 아직 實績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其他 64件 408,822천원은 技術部分에서 除外된 藥劑撒布測量 등이 單獨業務로 發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2>

部門別用役實績現況(1974)

單位

用役件數
1,000원

부	문	총	합	건	문	개	인	합	계	구	성	비
농	업	※5	78,393.	※3	15,699.	※53	44,475.	※61	138,567			2.9%
수	산		—		—		—		—			—
임	업		—		—		—		—			—
전	기	※1	1,440.	※1	6,380.	※52	78,758.	※54	86,578			1.8
기	계	※2	7,382.		—	※44	87,728.	※46	95,110.			2.0
화	공	※16	201,494.		—		—	※16	201,494.			4.2
섬	유		—		—		—		—			—
금	속		—		—		—		—			—
광	업		—	※9	9,370.	※2	609.	※11	9,979.			0.2
선	박		—	※2	10,246.	※2	4,500.	※4	14,746.			0.3
한	공	※27	329,619.		—		—	※27	329,619.			6.8
건	실	※132	1,308,911.	※169	767,834.	※171	890,446.	※472	2,967,191.			61.4
응	용 이	※11	76,323.	※16	46,374.	※252	456,606.	※279	579,303.			12
기	타	※25	267,237.	※33	116,452.	※6	25,133.	※64	408,822.			8.4
합	계	※219	2,270,799.	※233	972,355.	※582	1,588,255.		4,831,409.			100
	%		47.0		20.1		32.9	※1,034	100			

※ 技術用役實績件數

3. 現況의 分析

前項에서 여러가지 角度的 現況을 列記하였는 바 이를 項目別로 連關시켜 分析하여 본다.

(1) 業體登錄數는 1974年末 現在 85個業體로서 1973年의 74個業體에 比較하여 多少 增加하고 있으나 조금더 깊이보면 1973년에는 建設部門에 壓倒的으로 치우쳤던 것이 1974년에는 技術用役有成法の 施行에 따라 建設外各分野들이 活氣를 多少 띠게 되어 部門別登錄狀況이 比較的 高루 分布된 結果를 갖어왔다. 그러나 實績面에서는 建設部門을 包含한 몇개 部門을 除外하고

는 아직 極히 微弱한 狀況을 보이고 있다.

(2) 技術士의 技術用役業參與現況을보면 1974 '末 現在 登錄會員 415名 中에서 106名이 參與하고 있어 25.5%에 該當한다. 技術用役業이 技術士가 進出할 自己코스임에도 不過 25.5%가 이걸을 擇하고 있다 함은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무인가 納得이 안가는 면이 있지않나 생각한다.

또한 技術用役業總登錄分野 187個中에서 99個分野에 技術士가 參與하고 있어 參與率은 52.9%이며(106名中 7名은 複數參與), 業體別로는 綜合이 3.4%(36名), 專門이 29.2%(31名), 個人이 36.8%(39名)으로 되어 있다. 한 分野에 한 사람씩의 技術士가 參與해야 하는 原則으로 볼

때 制度的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大局의 見地에서 制度自體는 勿論 그 運營에도 커다란 矛盾이 아닌가 생각된다.

勿論 技術士의 分布自體가 偏向되어 있기 때문에 數的인 稀少 또는 未輩出分野에 對하여 暫

定的으로 非技術士의 參與길을 制度化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稀少 또는 未輩出分野는 앞 用 役實績表에서 보거나 非技術士(認定技術士) 參與로 登錄은 되어 있으나 實績을 보면 極少量이거나 全혀 없는 例가 많다.

<表 3> 기술사 및 인정기술사 참여현황

註: 기술사/인정기술사

부 문	참 여 상 황					기술사등록수	참 여 율
	총 합	전 문	개 인	합 계	구 성 비		
농업	4/ 5	3/	2/ 1 2	9/ 1 7	8.5/17.5	50	18.0%
수산	—	—	/ 1	/ 1	/ 1.0	6	—
임업	/	/	/	/	/	1	—
전기	/ 14	1/ 5	3/ 9	4/ 2 8	3.8/28.9	40	10.0
기계	1/ 9	/ 3	/ 7	1/ 1 9	0.9/19.6	36	2.8
화학	1/ 8	/	2/ 1	3/ 9	2.8/ 9.3	33	9.1
섬유	/	/	/	/	/	24	—
금속	/	/	2/	2/	1.9/	17	11.8
광업	/	4/	3/	7/	6.6/	19	36.8
선박	/ 2	3/ 6	/ 1	3/ 9	2.8/ 9.3	11	27.3
항공	1/ 1	/	1/	2/ 1	1.9/ 1.0	3	66.7
건설	2 8/	1 6/	1 9/	6 3/	59.5/	145	43.4
응용이학	1/ 3	4/ 6	7/ 4	1 2/ 1 3	11.3/13.4	30	40.0
합계	3 6/ 4 2	3 1/ 2 0	3 9/ 3 5	106/ 9 7	100/ 100	415	25.5

그리고 上記表에서 認定技術士의 參與狀況을 보면 總 97名이 참여하고 있는데 電氣部門이 가장 많아서 28.9%, 다음이 農業部門의 17.5%, 應用理學이 13.4%順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認定技術士의 參與狀況을 조금더 자세히 보면 電氣部門은 28名이나 參與하고 있는데 輩出된 技術士는 40名이나 되면서도 그 10%인 4名의 技術士만이 參與하고 있음을 어떻게 說明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認定技術士의 지나친 參與로 말미암아 正規技術士의 立地基盤을 오히려 縮少시켜 놓은 結果가 아닌지 모르겠다.

다음 農業部門의 認定技術士參與는 17名인데 그 全部가 農工分野로서 建設部門과 連關된 業務分野이다. 이 分野는 個人業體參與가 12名이나 되어 이 한사람이 하나의 會社를 構成하고 있는 結果가 되어있다. 그리고 조금더 깊이 分析해 보면 非技術士로서 建設部門의 登錄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技術用役育成法 施行前 建設部門用役業들이 不得히 類似業務內容인 農工分野

로 變身登錄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應用理學 部門도 地質分野가 大部分인데 過去 土質基礎分野業體들이 建設部門土質基礎分野로 登錄할 수 없기 때문에 不得히 認定技術士登錄이 可能한 地質分野로 轉身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全體적으로 볼때 認定技術士의 分布가 正規技術士의 稀少 또는 未輩出 分野를 補完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競爭하고 있는 分野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認定技術士制度의 本來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證明한다.

그리고 1975年度까지 輩出된 技術士會員은 總 495名에 達하고 있고 그 部門別 分布로 보더라도 比較的 고른 分布를 보이고 있어 今年以後 부터는 正規技術士단으로도 國內業務량이 오히려 不足한 現狀임으로 從前의 不自然스러운 暫定措置는 果敢히 是正해서 眞正한 技術用役育成을 圖謀하고 技術士의 質向上에 政策的 力點이

주어져야 할 時期에 到達했다고 생각된다.

(3) 用役實績現況을 보면 前年度인 1973年度의 實績에 比較하여 2,3倍나 增加하고 있는 것은 多少異常 膨脹現狀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科學技術全部門에 걸쳐 技術需要의 增大를 뜻하는 것이며 計劃態로의 向上을 勸導단체가 主導하는 現狀으로 풀이되어 앞으로 技術 勸導단체의 定着化의 조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에 業體種別實績을 보면 綜合業體인 6個業體가 74個分野에서 2270,799천원의 實績을 보여 全體 47%를 處理했고 專門業體가 14業體 40개 分野에서 972,355천원을 處理하여 20.1% 個人業體가 65個에 73個分野에서 1,588,255천원을 處理 32.9%를 나타내고 있는데 業體區分別 分野當 平均處理額을 換算해 보면 綜合이 30,686천원/分野이고 專門이 24,308천원/分野, 個人業體가 21,757천원/分野로 되어 있어 業務量處理能力은 勿論 經營面에서도 業體의 大型化가 바람직할 것 같다.

그리고 아직도 建設部門이 實績이나 技術士參與에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 우리나라 技術界를 建設部門이 主導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眞正한 工業立國의 實現을 보자면 金屬 鑛業 機械等 搖籃期에 있는 여러 部門의 技術用役이 早速히 發展해야 하겠고 發展하는 길은 于先 많은 일기리를 맡길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그外 問題點 몇 가지를 指摘할 수 있는데 첫째 脫專門性問題를 들 수 있다. 技術用役에서 專門性은 그 生命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技術士法이나 技術用役育成法에서도 그런 要旨을 強調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74年度 技術用役業 現況(科技處集計)을 보면 實績面에서 專門性侵害를 여러 件 發見할 수 있다. 이는 制度上으로 違法일 뿐 아니라 技術人的 名分上으로도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技術者가 技術活動을 할때 스스로 標榜한 自己分野를 넘어서 他分野로 侵害한다는 것은 技術倫理를 蹂躪하는 것이며 어떤 意味에서는 스스로 自己의 專門性을 冒瀆하는 것으로서 일찌기 技術者나 할 수 있는 일이지 正規技術者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發注者와 受注者의 結託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것이 이른바 不條理의 한 類型이 아닌가 생각된다. 今後 技術用役 業界의 淨化는 勿論 自身의 專門性을 尊重받기 爲해서라도 이러한 樣態는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技術用役業務의 下都給으로 困한 問題가 相當히 浮沈하고 있다. 이는 當事者間의 默契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外形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常例이나 害毒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技術用役業의 生命인 技術成果의 精度를 떨어뜨려 發注先의 信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要因이 되며 오직 高度의 專門的 技術의 驅使를 本分으로 하는 技術用役業의 權威를 失墜시킬 뿐 아니라 社會로부터 非難과 不信을 받아 市井 謀利蠶視當하게 되며 終局的으로 技術用役業의 立地基盤의 喪失을 自招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셋째 過當競爭으로 말미암아 技術用役의 特性을 잃게 되어 去來先으로부터 一般 都給業者와 같은 取扱을 當하게 됨은 큰 損失이 아닐 수 없다. 技術用役業이 一般都給業과 다른 點이 高度의 專門技術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創出에 있는데 이러한 社會的 特權을 조그마한 營利競爭으로 스스로 拋棄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4. 制度上的 問題點

技術用役業이 制度化한 것은 1973年 2月 5日 法律 第2474號로서 技術用役育成法(以下法)이 制定公布되고 이어서 同施行令(1973年 9月 7日 大統領令 第6845號) (以下令)이 公布됨으로서였다. 이 法令은 公布當時부터 여러군데의 不合理點이 지난 一年間의 施行過程에서 露出되고 있는 바 그 몇가지를 列記해 본다.

(1) 法令의 內容中 여러 項目에 걸쳐 強制 制限 禁止條項(例 法 第 3, 4, 8條 令 第 10, 11條 等)이 있음에도 違反時에 이를 制裁할 수 있는 罰則規定이 없기 때문에 事實上 있으나 마나한 結果가 되고 있다.

(2) 技術用役行爲는 發注者와 受注者의 雙方 契約에 依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장 重要한 契約의 樣式과 節次가 制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從來

의 慣習대로 建設業의 都給契約形式에 準해서 施行하고 있어 技術用役法令의 規定이나 技術用役의 特性이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例를들면 發注官署에서 어떤 技術用役프로젝트를 發注할 경우 一般建設業發注와 같이 豫算會計法에 依據하여 公開入札 또는 指名競争入札에 부치는 것이 大部分이다.

이때에 節次 方法도 一般建設業과 같이 指名入札의 경우

- ① 入札承諾與否通知
- ② 入札者指名
- ③ 現場說明
- ④ 入札
- ⑤ 落札決定

의 順序로 執行하고 있어 受注者選擇에 있어서 아이디어 創出을 本分으로 하는 技術用役의 特性을 살리지 못하여 眞正한 아이디어 創出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 技術用役의 生命이 深奧한 專門性을 強調하는 데 있다할 수 있다. 앞서의 여러가지 分析과 1974年度 技術用役現況에 依하면 綜合業體나 專門業體의 例를 보면 自己會社에서 登錄하지 않은 技術分野의 實績은 거의 發見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正規技術者일 경우 自身の 專門分野를 떠나 다른 分野를 넘보는 것을 禁忌로 하는 技術者의 共通의 心理가 그대로 反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制度(令 第3,4條)가 技術의 生命인 專門性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容納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로 因하여 一部 惡德 用役業者의 過慾을 誘發시키거나 似而非技術者의 跳踉을 誘發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여 去來先의 不信과 業界의 權威를 떨어뜨리는 것은 制度 그 自體의 矛盾이 아닌가 생각된다. 施行當初 이미 豫想된 일이나 一年間의 時間이 지나는 동안 그 廢端이 露骨적으로 露出되고 있다.

(4) 外國用役業體와의 링크와 技術能力育成門題 技術用役育成法 第4條 ④項에서 外國콘실판트에게 遂行시킬 프로젝트에 對해서 遂行可能한 部分에 限해서 國內用役業者에게 參與케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業務遂行이란 한 面만 생각한 것으로 여기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外國에 프로젝트를 맡기는데에는 다른

여러가지 枝葉的인 理由도 있겠으나 主된理由는 우리 技術만으로는 遂行하기 어렵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려운 일은 外國人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歸着한다.

技術用役育成法이 技術用役業育成에 主眼을 두고 있지만 技術用役業의 中樞機能인 技術能力育成에는 等閑한 느낌이 없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法의 本質的 要求가 아닌가 생각된다. 胎兒는 버리고 胎盤을 안고 있는 結果가 아닌지 모르겠다.

先進外國에 比較하여 뒤지고 있는 技術能力을 先進水準에 가장 빠르게 接近시키는 길은 先進技術의 保有者들과의 交流와 主題를 둔 discussion의 되풀이 그리고 自身の 끊임없는 切磋琢磨에 依해서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契機를 國家가 制度的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極히 常識的인 일일 것이다.

또 한가지 強調하고 싶은 것은 現在, 政策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技術育成方案이 그저 平凡하고 一般的인 汎用技術基盤, 내지 中間技術基盤育成에만 지나치게 神經을 기울이고 있고 眞實로 近代科學技術의 精髓인 特殊技術 내지 尖端型技術의 育成에는 等閑視하는 느낌이 든다. 研究所設立이나 2~3日間의 外國人招請세미나 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것이 最一線 技術産業參與者에게 實質的으로 技術育成의 피와 살이 되기에 는 너무 消極的인 양인가 생각된다.

5. 提 案

技術用役育成法 施行 1年間に 露出된 여러가지 問題點과 그 外 여기에 關聯한 問題點들을 생각나는대로 指摘해 보았다. 이것들은 大體로 技術者들이면 누구나 經驗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前項에서 指摘한 問題點에 對하여 내 나름대로의 是正方案을 開陳해 보고자 한다.

(1) 制度의 改善

制度는 모든 活動의 根據가 된다. 따라서 制度에 問題가 있으면 그에 關聯된 모든 活動에 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그리고 發生한 制度上的

問題點은 早速히 是正되어야만 關聯活動의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提案은 法令의 條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問題發生源을 除去하기 위한 方案만을 들어볼까 한다.

認定技術士의 暫定措置는 除去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앞 分析에서와 같이 現在 認定技術士의 參與分析을 보면 技術士의 未及部分을 補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多少有關은 하나 自己 專門分野가 아닌데도 多少 活氣있는 分野가 있으면 거기에 끌려서 甚한 競爭을 일으켜 善良한 正規技術士參與를 沮害하며 프로젝트 受發注過程에서 여러가지 不條理現象을 發生시키는 作態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此際에 이러한 弊端의 要因을 制度的으로 收拾시킴으로써 技術士의 數的 稀少分野에 앞으로 必要量의 技術士가 早速히 充員되도록 助長하는 것이 올바른 制度化的 方向이 아닌가 한다.

法令은 宜當 助長과 더불어 規制나 禁止規定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施行하자면 罰則이 隨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技術用役育成法도 例外가 아닐바엔 여기에도 宜當 罰則規定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受發注過程上 必要한 節次方法을 技術用役의 特長을 充分히 살릴 수 있고 그 本分을 다할 수 있게 特別制定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法令의 改正이 아니라도 指針이나 要領으로 定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綜合用役體나 專門用役業體에 있어서 登錄要件이나 프로젝트 遂行上 專門分野 아닌 類似分野 擔當制度는 어떤 表現으로도 說得力이 없다고 생각된다. 當初의 立法趣旨는 技術用役業體의 大型化育成方策으로 提起되었다고 하나 眞正한 大型化育成方案은 이런 變則的 方策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適切한 方法이 있다고 생각된다. 發注官廳의 用役業者 選定基準을 強化하여 複合分野의 프로젝트는 相當의 專門 또는 綜合業體에 맡기는 것을 制度化하는 것도 그 한 例일수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善良한 技術者에게 非專門 프로젝트를 強行시키는 無分別을 是正하기 爲하여 早速히 이 規定의 改善이 緊要하다.

技術能力育成方法을 制度化해야 한다. 技術用役育成도 必要하지만 그에 앞서 技術能力育성이 必要하다 이는 여러가지 길이 있겠으나 特히 外國用役業者가 國內用役을 遂行할 경우 여기에는 國內用役業者가 遂行可能한 範圍의 業務만을 國內業者에게 시킬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全般에 걸쳐 外國技術者와 密着해서 dis cussion이 되게 하여 하루속히 그 技術을 實得케 하여 此後에는 外國人을 불러들이지 않아도 國內技術로 遂行이 되겠음 하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보아진다. 이것은 國內需要充當뿐 아니라 나아가서 外國 프로젝트에도 우리 技術이 參與하도록 育成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좁은 땅에서 많은 人口가 天然資源마저 貧弱한 이 땅에서만 짓부딪쳐가며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豊富한 良質의 勞動力을 國際社會에 分散시키는 길은 單純한 汎用技術만으로서 산 賃金에 酷使만 當할 것이 아니라 先進技術인 尖端技術을 實得해서 外國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맡아 遂行하는 能力을 培養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方向으로 制度가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2) 其他周邊環境의 淨化

技術用役育成法이 技術用役業을 保護하는 것은 用役業者의 利益을 높이기 爲한 保護가 아니라 微弱한 用役業의 基盤을 鞏固히 함으로써 社會開發의 重要한 한 分野로서 定着시켜 國家發展의 一翼을 擔當시키는데 目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利潤은 오로지 技術用役業을 키워가는데 再投資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一部 業者의 경우 이 育成法이 自身の 私利로 늘려주기 爲한 것으로 錯覺하고 過慾受注와 不當한 下請處理等(그것도 過少 金額), 그 過程에서 釀成되는 各種 不條理는 表面化하지 않은 듯하나 其實 밑바닥에 깔려 業界는 勿論 社會의 嫌惡의 的이 되어 있음을 反省해야 한다.

그리고 用役業務의 發注者(官署 또는 團體 個人)는 用役業者를 選定 할때에 그 業體의 技術能力에 基準을 두어야 할 것이다. 從來의 一部 例를 보면 技術能力보다는 人緣이나 地緣을 따라 受發注하는 例도 많았다(경우에 따라서는 權力도 介入), 그리고 그로 인한 不實한 成果(報

告書)는 活用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死藏시키는 例도 있었다고 기억된다.

6. 結 論

우리나라의 技術用役業도 時間的으로는 그럭저럭 成年期에 접어들고 있으며 政策이나 制度의 뒷받침도 他國에 比較하여 앞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의 現況分析에서와 같이 制度나 政策의 保護로 技術用役業의 存在價値도 크게 飛躍하여 不可缺의 한 社會 構成要素로 定着해가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指摘한 若干의 問題點도 안고 있으나 過去에 比較하면 그 體質도 크게 改善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技術用役育成은 國內問題로 끝날것이 아니라 外國用役을 受注하는데까지

到達해야 한다. 海外用役이라고 해서 굳이 最高水準의 技術이 아니라도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國內의 良質勞動力과 싼 賃金 條件은 그 길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이미 相當한 量의 建設用役이 中東을 비롯한 東南亞一帶에 크게 進出하고 있는데 그 基盤을 타고 技術用役의 進出도 발돋움 해볼만하다고 느껴진다. 이 길은 우리의 才能이 世界發展에 寄與한다는 보람과 國力水準을 높이는 보다 큰 意味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業界自身은 勿論, 政府나 社會에 付託하고 싶은것은 有益하고 아름다운 果實은 그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投資와 끊임없는 努力, 強한 執念, 그리고 忍耐에 依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基本原理를 再認識하고 持續的인 自身の 陶冶와 周邊社會로부터 育成의 손길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科學技術者倫理要綱

現代的 國家發展에 미치는 科學技術의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우리들의 行動의 指針이 될 倫理要綱을 아래와 같이 制定하고, 힘써 이를 지킴으로써, 祖國의 近代化에 이바지 할 것을 깊이 銘心한다.

1.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모든 일을 最大限으로 誠實하고 公定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2.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恒常 專門家로서의 權威을 維持하도록 努力하며, 自己가 所屬하는 職場 또는 團體의 名譽를 昂揚하여야 한다.
3.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法律과 公共福利에 反하는 어떠한 職分에도 從事하여서는 안되며 의아스러운 企業體에 自己의 名稱을 빌려주는 것을 拒絕하여야 한다.
4.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依賴人이나 雇傭主로부터, 取得 또는 그로 因해 얻어진 科學資料나 情報에 對하여서는 秘密을 지켜야 한다. 또는 他人의 資料情報을 引用할때는 그 出處를 밝혀야 된다.
5.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誇張 및 無限한 發言과 非權威的 또는 眩惑的 宣傳을 삼가야 하며 또 이를 制止하여야 한다.
특히 他人의 利害에 關係되는 評價報告 및 發言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
6.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어떠한 研究가 그 依賴者에게 利益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않나하고는, 어떠한 報酬를 위한 研究도 擔當하지 않는다.
7.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祖國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限으로 奉仕精神을 發揮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應分의 物質的 協助를 아껴서는 안된다.